

2024년 국립산림치유원 「나눔의 숲 캠프」 수시모집 공고

< 사업 목적 >

◇ 사회·경제적·정책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·치유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명: 2024년 숲체험교육사업 「나눔의 숲 캠프」
- 접수기간: 2024년 4월 16일(화) ~ 모집마감 시
- 운영기간: 2024년 5월 1일(수) ~ 8월 30일(금)
- 운영기관: 국립산림치유원 예천운영본부
(경북 예천시 효자면 은풍로 1088-119)
- 지원사항: 프로그램비, 식비, 숙박비
- 제출서류: [붙임1] 나눔의 숲 캠프 참가신청서 서식 참고

□ 모집대상

- (공통) 취약계층 참가자 등 총 20인 이상인 경우
- (조건) 다음의 법적 근거 기관·시설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필요

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6조	•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	•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
• 「아동복지법」 제44, 52조	•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	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
•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	•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	•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
•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	•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2조	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9조
•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	•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	
•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		
•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		
• 기타 국가 정책 및 사회적 이슈에 부합하는 지원 대상자		

* 해당 세부 판단기준은 하단의 [참조1] 참고

□ 신청 방법

- 참가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이메일 접수 *공문 및 기관 직인 必

신청기관	담당자	연락처	이메일
국립산림치유원	서유덕	054-639-3424	chiufowi@fowi.or.kr

□ 선정 기준

- 지원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평가항목(배점표) 산정 고득점순으로 참가자 선정

평가항목	취약계층 수혜집중도	지역적안배	참가인원수	중복수혜 여부	파급 효과성
배점	30	20	20	15	15

* 단, 모집인원 미달인 경우 평가에 따른 배점 절차 없이 지원대상에 충족될 경우 선정

□ 기타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일한 숲체험교육사업,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(바우처) 중복 수혜 불가, 특별한 사유 없이 참가를 취소 및 변경(일정, 참가인원 등)을 할 수 없습니다. 해당 사항이 발생할 경우, 추후 선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.
* 선정 이후, 참가 취소 등 일정에 따라 위약금 규정에 근거하여 자부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
- 운영상황에 따라 일정,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운영 기관의 강당, 인력 등의 조건에 따라 2개 이상 모집 단체가 연합하여 운영될 수 있습니다.
- 이동 간 차량(버스)비는 자부담이 원칙입니다.
- 신청일정은 당일, 1박 2일, 2박 3일형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* 예시: 당일은 11.1./ 1박 2일은 11.1.~2./ 2박 3일은 11.1.~3.로 표기)

○ 2개 단체 이상이 연합하여 신청할 시 참가 기관명을 모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추가 제출 시 직인이 포함된 공문 모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* 참가신청서는 대표기관에서 통합하여 1개로 작성

○ 사업 모니터링을 위해 자체 만족도 조사 및 효과성 분석 설문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.

○ 캠프에 참여하는 단체는 자체 보험이 있더라도, 캠프참가 기간 동안의 여행자보험 가입이 필요하며, 경우에 따라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. (붙임. 서식에서 참가 유형에 따라 택1)

○ 선정 이후 참가신청서 인원, 참가자명단 인원, 보험가입자명단의 인원은 일치 해야하며, 캠프 제출명단(보험가입자) 외 인원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○ 본 사업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(녹색자금)으로 추진되며,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합니다.

붙임1. 나눔의 숲 캠프 참가신청서 서식

붙임2. 나눔의 숲 캠프 이용 및 프로그램 안내

붙임3. 취약계층 판단기준 및 증빙서류 안내

참조1

취약계층 세부 판단기준

□ **취약계층 세부 판단기준**

소관 부처	시설종류	세부종류		관련법
		생활시설	이용시설	
보건 복지부	노인복지시설	○ 노인주거복지시설 ○ 노인의료복지시설 ○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	○ 재가노인복지시설 ○ 노인여가복지시설 ○ 노인보호전문기관 ○ 노인일자리지원기관	「노인복지법」
	복합노인복지시설	○ 농어촌에지역에 한해「노인복지법」제31조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배치한복합노인복지시설을설치·운영가능		「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 증진을위한특별법」
	아동복지시설	○ 아동양육시설 ○ 아동일시보호시설 ○ 아동보호치료시설 ○ 자립지원시설 ○ 공동생활가정	○ 아동상담소 ○ 아동전용시설 ○ 지역아동센터 ○ 아동보호전문기관 ○ 가정위탁지원센터	「아동복지법」
	장애인복지시설	○ 장애유형별거주시설 ○ 중증장애인가주시설 ○ 장애영유아가주시설 ○ 장애인단기거주시설 ○ 장애인공동생활가정 ○ 피해장애인쉼터	○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○ 장애인직업재활시설 ○ 장애인의료재활시설 ○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	「장애인복지법」
	어린이집		○ 어린이집	「영유아보육법」
	정신보건시설	○ 정신요양시설 ○ 정신재활시설증생활시설	○ 정신재활시설중이용시설	「정신건강증진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관한법률」
	노숙인시설	○ 노숙인자활시설 ○ 노숙인재활시설 ○ 노숙인요양시설	○ 노숙인종합지원센터 ○ 노숙인일시보호시설 ○ 노숙인급식시설 ○ 노숙인진료시설 ○ 쪽방상담소	「노숙인등의복지및 자립지원에 관한법률」
	사회복지관 결핵·한센시설	○ 결핵·한센시설	○ 사회복지관	「사회복지사업법」
	지역자활센터		○ 지역자활센터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
	다함께돌봄센터		○ 다함께돌봄센터	「아동복지법」
여성 가족부	성매매피해지원시설	○ 일반지원시설 ○ 청소년지원시설 ○ 외국인지원시설 ○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	○ 자활지원센터 ○ 성매매피해상담소	「성매매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 관한법률」
	성폭력피해보호시설	○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	○ 성폭력피해상담소	「성폭력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 관한법률」
	가정폭력보호시설	○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	○ 가정폭력상담소 ○ 긴급전화센터	「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」
	한부모가족복지시설	○ 모자가족복지시설 (기본,공동,자립) ○ 부자가족복지시설 (기본,공동,자립) ○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(기본,공동) ○ 일시지원복지시설	○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	다문화가족지원센터		○ 다문화가족지원센터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	건강가정지원센터		○ 건강가정지원센터	「건강가정기본법」
	청소년복지시설	○ 청소년쉼터 ○ 청소년자립지원관 ○ 청소년치료재활센터 ○ 청소년회복지원시설		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

* 사회복지시설 종류에 따른 시설의 생활, 이용시설의 이용자 등 해당